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2026-제8호 입법정책 동향

2026.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8월 일

발 행: 2026년 8월 일

목 차

I. 타 시도 입법 동향

- ◇ [제정]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6
- ◇ [제정]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1
- ◇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17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
- ② [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III. 해외 법제 동향

-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입법례 42

IV.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 ①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고·고발한 자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 48
- ②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시, 행위 허가권자 주체 50

V.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56

I . 타 시도 입법 동향

I. 타 시도 입법 동향

◇ [제정]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 7. 13.] [경상북도조례 제5502호, 2026. 7. 13.]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및 제6조)
-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및 제10조)

□ 입법 시사점

- ▲ 기존 유사 조례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조례와 연계하여 ‘청년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간 유기성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청년 예술인 다수는 창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불안정과 활동 기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청년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큼

□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시행 중

⇒ 위 유사조례를 통해 전북도는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지원과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북도의 본 조례처럼 청년 예술인을 특정한 지원 조례는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전북의 전체 예술인 중 청년예술인 비중은 33%로 경북의 비중과(34%) 유사한 만큼, 전북 또한 기존 유사조례와 연계하여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효용성 있는 정책 추진 시, 본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청년예술인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현황(2026년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
4. 청년 예술인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5. 청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긴급 지원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청년 예술인의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 사업
2.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6. 10. 24.] [충청남도조례 제6115호, 2026. 4. 23.]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변화와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과 산업 육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해상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3조)
-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 규정 (제4조)
-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및 협의회 구성 등 규정 (제6조~제7조)
- 주민 보호 등 규정 (제6조~제7조)
- 산업생태계 조성, 투자유치, 지역기업 육성 규정 (제10조~제12조)

□ 입법 시사점

- ▲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변화와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지역은 서해안 해역을 접하고 있어 해상풍력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 다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지역 환경, 수산업계, 주민 생활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해 보임

▣ (전북도) ‘해상풍력’으로 특정된 지원 조례 없음

⇒ 전북도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분야별, 단계별로 나눠 여러 조례를 통해 관련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상풍력’ 관련 전북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또한 충남과 같은 서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게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방안 연구’ 수행 및 ‘민간기업과의 해상풍력 산업 MOU 체결’ 등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해상풍력) 산업 정책 및 제도를 탄탄히 다지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해상풍력 지원항만 구축 방안 연구’(2026.3.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 ‘우리은행, 전북 해상풍력 4,000억 생산적 금융 투입’(2026.8.7. TV조선)

⇒ 추후, 해상풍력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진일보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경우, 본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및 부지 일체를 말한다.
3.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에 관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 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공존 모델 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 발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구성에 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협의·조정
2. 해상풍력단지 입지 후보 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 방안 등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어업인 대표
3.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5.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주민 보호 등) 도지사는 해양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로 인한 환경침해를 최소화하여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 소재 항만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 등)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의 우선 활용,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기자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제13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 설치 환경 및 어업 형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6. 5. 7.] [울산광역시조례 제3274호, 2026. 5. 7.]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개정이유

-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준칙(“26.1.2.)”을 반영하여 조문의 체계 및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표준화된 기준 정비

□ 주요내용

-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준칙(“26.1.2.) 반영
 - 1) 위험물 취급배관의 불연성기체 내압시험의 압력기준을 수정
(제3조제2항제2호나목)
 - 2) 「건축법」과 방화문 용어를 통일함(제5조제2호)
 - 3) 이동탱크 상호 간 위험물 주입 금지 신설(제9조제2항)
 - 4) 재난현장 동원차량에 대한 이동 주유 허용을 명시(제9조제2항5호나목)
 - 5)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신설(제10조)
- 소량 위험물 시설별로 조문체계와 형식 재구성(제3조부터제9조까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정비함

□ 입법 시사점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제1류 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 산화성 액체까지 총 6가지로 구분되며,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됨
- ▲ 반면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별도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중이므로, 시도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준칙(‘26.1.2.)”을 마련함
- ▲ 특히, ‘24.6.24.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이후, 범정부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 (자연발화성 물질)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자연 발화하는 물질
 - ✓ (금수성 물질)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열이 나거나 불이 붙고, 위험한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칼륨, 나트륨, 리튬 등)

□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중이며, 소방청 준칙에 맞게 개정 검토 필요

✓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준칙」과 비교

구 분	소방청 준칙	전북도 조례	비고
저장·취급 세부금지	충격·마찰·과열 회피, 폐기물 처리 등 9개 세부항	일부 반영	
배관기준	재질, 내압시험, 부식방지 등	일부 반영	
이동탱크 기준	두께, 압력밸브, 주유 금지 등	일부 반영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신 설	없 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일 것
2.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 놓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선반 등에서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5.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해당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 등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9.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지정수량의 5분의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8.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9.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10.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1.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할 것
1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14.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와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5.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6.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7.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19.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2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22.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위험물 저장·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2. 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3.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로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배관의 접합부분(용접과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의 선반 등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벽·기둥·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할 것
4. 옥내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만을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
40 ℓ 이하	1.0mm이상
40 ℓ 초과 100 ℓ 이하	1.2mm이상
100 ℓ 초과 250 ℓ 이하	1.6mm이상
250 ℓ 초과 500 ℓ 이하	2.0mm이상
500 ℓ 초과 1,000 ℓ 이하	2.3mm이상
1,000 ℓ 초과 2,000 ℓ 이하	2.6mm이상
2,000 ℓ 초과	3.2mm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했다.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지하의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6조제4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튼튼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① 소량 위험물을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동탱크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탱크에는 20kPa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6.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mm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새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8.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9.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10.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cm 너비 15cm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동탱크로부터 이동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3.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입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5.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해당 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I·II 및 IX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
 -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 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600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960ℓ 이상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에 따른 소화기 등은 방호대상물(해당 소화기에 의하여 소화해야 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할 것
9. 금수성물질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할 것
10.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11. 설비의 개방 또는 용기의 개봉은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서 할 것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부터 제3조, 제4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5조,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이하 제3항제1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이동탱크저장시설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가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른 보세구역 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른 소량 위험물 시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10조에 따른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11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5.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부 칙 (개정 2026. 5. 7. 조례 제3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장·취급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및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로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준하는 설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시 저장·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1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9호, 2026. 6. 2., 시행 2026. 12. 3.]

□ 개정이유

-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이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법 취지와는 달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

□ 주요내용

- ①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업체 확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록거부대상에서 제외
(제7조제2항제2호의 단서조항 신설)
- ② (법 시행일 등) 시행일 및 가맹점 등록 적용례(부칙 신설)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u>경우</u> <단서 신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 입법 시사점

▲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목적을 ‘소상공인 보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방향을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자치입법 책임 확대) 가맹점 등록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 기준 및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경제구조와 지역환경 등을 고려한 조례 설계가 중요해짐
 - (균형 있는 제도 운영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방향에서 ‘주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향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기존 방향과 개선 방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과제로 보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설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분석 및 보완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 연관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기존에는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았고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부담발생이 존재하였음
- 이에 ‘국내 구매사업’과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전문인력 고용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여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 도모
-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여 각종 비용절감과 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켜 향후 우주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을 함

□ 주요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 보상)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 일부 보상 가능
(제10조의3 신설)
- ② (연구인력 고용 지원) 방위산업청장이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14조의2 신설)
- ③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업체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④ (방위산업공제조합 사업범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등을 추가
(제2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
<신설>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 (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 -----.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입법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임

- (도전 기업 지원 강화) 기존 군수품 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참여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최종 사업선정에 실패할 경우에 비용 회수가 어려웠음

이번 개정으로 ‘성공기업 보상’이 아닌 ‘도전기업 지원’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됨

- (방산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방산기술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이 비용을 지원받고 공제조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양한 방산시장(AI, 드론, 반도체, 우주, 사이버보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됨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정사업 추진에 강한 원동력이 될 것임

✓ (전북도 연관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II. 해외 법제 동향

IV. 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2호, 2026. 6. 30. 강명원 조사관】

□ 주요내용 [요약]

- 최근 프랑스는 구조·구급 활동 증가, 화재 연기 등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 확대 등으로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행정·실무 중심으로 지원되어, 소방관을 위한 의료지원 및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프랑스는 2026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도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 보건의·간호사·약사·심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의 구성과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의의 다기능 업무 수행 특례를 인정함

✓ (관련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프랑스의 입법 배경

- **(배경)** 소방관의 구조·구급 출동 증가, 화재 현장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 외상 사건 경험 등으로 소방관의 직업성 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됨
- **(문제점)** 프랑스는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로 행정·실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었음 구체적으로 도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부에 의료 인력조직, 직역별 임무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의료지원과 전문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참고) 프랑스 내무부 「소방 및 구조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소방 의료구조서비스 인력은 총 13,604명

- (소방구조기관 현황) 내무부 예하의 소방·구조·구급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각 도에 설치되어 있음

구 분	내 용
주요 임무	✓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
기타 임무	✓ 시민 안전 위협의 예방 및 평가 ✓ 재난 대응 조치의 준비 및 구조 수단의 조직화 ✓ 사람, 동물, 재산 및 환경의 보호 ✓ 사고, 재난의 피해자 등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 구조 및 응급의료 임무 수행을 위한 권한 내 원격의료 참여

□ 법률의 구성 및 내용

- (법률의 구성)
 - 프랑스는 입법 시 주요 논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 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총 4개 조항으로 제정

조 항	주요 내용
제1조	✓ 소방 구조기관(도) 내 보건국에 속해 있는 소방 의료구조서비스 인력 (보건직,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심리학자, 의사 및 기타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임무 규정, 보건직의 다기능 임무 수행 특례 명시
제2조	✓ 보건국의 의료인력 구성 명시 ✓ 의료인력의 임무 수행방식 규정: 의료 협력팀을 구성 후 의료지원
제3조	✓ 파리 소방여단내의 민간 의료인력에게도 적용 ✓ 마르세유 해군소방대내의 민간 의료인력에게도 적용
제4조	✓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도 적용 등

○ (주요 내용)

- ① (의료인력 임무규정) 의료인력의 법적 지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 간호사, 약사, 심리치료사, 수의사 등 **직역별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② (보건의의 통합적 임무 수행 특례) 원칙적으로 예방의학 · 적합성 판정 · 진료를 구분하도록 하는 프랑스 노동법 체계와 달리, 인력 부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 1명이 3가지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시**
- ③ (소방관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 강화) 보건의 · 간호사의 예방의학 · 건강관리 임무를 명문화하고 심리치료사 · 심리학자를 정식 구성 인력으로 규정
- ④ (보건국의 인력 명시) 법률 제2조 전단에 “보건국은 의사, 약사, 보건관리자,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전문 보건의료 인력으로 구성된다”로 규정
- ⑤ (의료협력팀 명시) 법률 제2조 후단에 **각 직역이 의료 협력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 정보 공유 · 공동 의사결정 · 예방 · 치료 · 사후관리 연계를 제도화

□ 입법 시사점

○ (우리나라 현황)

- 2026년 1월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452만501건의 출동이 발생하였고, 2024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재난 현장 외상 사건 노출경험은 연평균 5.8회이며, 이 중 7.2%가 PTSD를 호소함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유사하게 출동 증가·정신건강 악화라는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프랑스처럼 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와 직역별 임무, 협업방식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함

○ (프랑스 입법례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

① 의료인력의 법적 지위·직역별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 보건의·소방심리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권한을 세분화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직역별 임무를 법령에 구체화 할 필요 있음

② 정신건강 지원 인력의 정식 제도화

-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PTSD 발병률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심의·처리 필요

✓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관련 계류중(2025. 10월)

참고

한국-프랑스 소방·의료 지원체계 비교

구분	프랑스	대한민국
운영기반	도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 보건국·의료인력 상시배치	소방병원(중앙), 시·도 소방본부별 보건의·심리지원단·전문치료센터
법적근거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직역별 임무	각 직역별 임무를 법률에 세부 명시	소방 보건의 등 설치근거는 있으나, 세부 임무 규정은 상대적으로 간략
정신건강 대응	심리치료사·심리학자를 정식 구성인력으로 법제화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협업체계	‘의료 협력팀’ 구성·운영을 법률에 명시	명시적 협업 의무 규정 확인 안 됨

Ⅳ.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 해석 사례

V.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1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고·고발한 자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

[법제처 26-0314,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2026. 6. 30.]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제1항)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제2항)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자(제1항)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제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나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바,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일련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서 지방보조금과 포상금은 그 법적 성격 및 지급대상 등이 전혀 다르므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20일)보다 긴 기간(30일) 동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시, 행위 허가권자 주체

[법제처, 26-0316, 강원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2026. 7. 15.]

□ 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도(道)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두 개의 시(A시, B시)에 걸쳐 있어 행위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하 “행위지 관할청”이라 함)과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이하 “보호구역 관리청”이라 함)이 서로 다르고, A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구역 관리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할”이란 본래 일정한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바, 위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대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 즉 행위지 관할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자’를 일원적으로 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허가가 같은 법 제8조제2항이 규율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순찰 및 단속 등 상수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수도법」 제8조제2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신축 등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개별·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가까지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허가에 대한 권한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주체인 ‘보호구역 관리청’이 아닌, 허가 대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즉 ‘행위지 관할청’이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경우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실제로 건축되는 지역의 자연적·사회적·행정적 여건 등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허가 권한은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허가 권한이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의 수질 보전에 관한 책임을 지는 보호구역 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권한이 보호구역 관리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권한 또한 보호구역 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여, 행위 허가 단계에서 그 행위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위지 관할청이 행위 허가권자가 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인 수질 보전은 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질관리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는 상수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감시·단속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개별·구체적 처분권인 행위 허가 권한까지 보호구역 관리청으로 귀속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의평결일자: 2026. 7. 1.]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효과 좋은 다이어트용 한약으로 입소문이 난 한약사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직접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춰 다이어트를 돕는 한약을 지어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약국에 방문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먹었던 한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똑같은 한약으로 다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전에 지어준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만들어 손님에게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는 홍길동 씨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길동 씨는 초진은 대면으로 상담했고, 동일 처방을 재주문한 것일 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관련 조문: 「약사법」 제50조

- ✓ 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당사자의 주장

① **(검사)** 홍길동 씨의 이번 판매 행위는 한약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당시 주문자의 신체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 맞춘 한약 조제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죠. 기존과 동일한 한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홍길동)** 손님은 두 달 전 제 한약국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한약을
구매한 분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한약을 처방했고,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문은 그때와 내용물, 성분, 가격이 모두 같은 재주문일 뿐입니다.
초진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미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약
판매 행위 역시 한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 이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유

위 사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법리를 종합하면 ① 홍길동 씨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 과정 없이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홍길동 씨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이는 주문자가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홍길동 씨의 이와 같은 판매 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